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9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2. 제안일 : 2024. 10. 31.
3. 회부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책임의 주체¹⁾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²⁾에

1) 「국가보훈 기본법」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시행령에서 그 지급 수준이 정해짐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³⁾(이하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이라 함)은 조례로 정하여 지급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수당 지급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5만원으로 한다.

- 3)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 참전영예수당,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상이한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별 현황>

('25.1월 기준, 단위 : 만원)

금액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3	35	36	40	45	46	56	60
지자체	228	5	7	2	31	9	5	7	2	39	4	6	5	3	18	10	34	3	9	4	1	1	4	13	1	1	1	3

※ 지방자치단체(기초 226곳, 특별자치 2곳) 전국평균액 236,000원 ('25.1월 기준)

* 참전구분별(6.25/월남) 및 연령별 지원액이 다른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구분 시·도	광역단체(17곳)		기초자치단체(226곳)	
	지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금액
서울	○	20만원	○	3~10만원
부산	○	13만원	△	0~20만원
대구	○	14만원	○	6~21만원
인천	○	10만원	○	5~12만원
광주	○	10.85만원	○	4.65만원
대전	○	12만원	○	8만원
울산	○	14만원	○	6만원
세종	○	15만원		
경기	○	5만원	○	10~40만원
강원	○	6만원	○	17~50만원
충북	○	6만원	○	15~25만원
충남	○	10만원	○	30~50만원
전북	○	4만원	○	8~11만원
전남	○	5만원	○	9~20만원
경북	○	10만원	○	10~30만원
경남	○	12만원	○	15~18만원
제주	○	25만원		

※ 월 지급액 기준임(단, 경기도의 경우 연1회 60만원 일시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참전한 헌신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책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자치단체 본래의 업무인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음.

○ 자치사무로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수혜대상 간 형평성, 참전유공자 유형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과 명예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자치사무의 성격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⁴⁾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의하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을 점검·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⁵⁾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 및 재정여건이 다르므로 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⁶⁾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4) 서울신문 2023.10.10. “권한도 없으면서... 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지침’ 추진 논란”

5) 울산광역시 의견

6) 안양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견,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에 따른 경비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에 국고보조 시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수당 지급 현황

(2025.1월 기준)

지급액	개수	광역단체(개수) : 기초단체명
600,000원	3	충남(3) :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560,000원	1	강원(1) : 화천군
460,000원	1	강원(1) : 정선군
450,000원	1	경기(1) : 구리시
400,000원	13	경북(1) : 울진군 충남(12)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360,000원	4	강원(4) : 삼척시,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350,000원	1	대구(1) : 군위군
330,000원	1	부산(1) : 기장군
310,000원	4	강원(3) :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충북(1) : 증평군
300,000원	9	서울(3) : 서대문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2) : 여주시, 포천시 경북(3)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경남(1) : 산청군
280,000원	3	강원(1) : 태백시 충북(2) : 진천군, 단양군
270,000원	34	서울(17) :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남(17)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60,000원	10	경기(1) : 동두천시 강원(5) :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충북(4) :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250,000원	18	서울(1) : 동대문구 경기(3) : 김포시, 양평군, 김포시 경북(12) : 경산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제주(1) : 제주 전남(1) : 신안군

240,000원	3	강원(2) : 강릉시, 원주시 충북(1) : 영동군
230,000원	5	서울(4) :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강원(1) : 춘천시
220,000원	6	인천(1) : 옹진군 경기(3) : 가평군, 용인시, 의왕시 충북(2) : 제천시, 청주시
210,000원	4	부산(2) : 해운대구, 강서구 경기(1) : 안산시 충북(1) : 충주시
200,000원	39	경기(6) : 광주시, 군포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하남시 경북(6) : 경주시, 고령군, 영덕군, 예천군, 울릉군, 포항시 대구(8) :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5)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5) : 중구, 동구, 강화군, 계양구, 서구 전남(4) :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진도군
190,000원	2	전남(2) : 해남군, 장성군
180,000원	7	부산(2) : 부산진구, 동래구 인천(2) : 남동구, 미추홀구 경기(3) : 남양주시, 성남시, 화성시
170,000원	5	경기(1) : 안양시 전남(4) :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보성군,
160,000원	9	경기(1) : 오산시 부산(7) :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전남(1) : 영광군
155,000원	5	광주(5)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150,000원	27	경기(9)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부산(1) : 동구 세종(1) : 세종시 인천(2) : 부평구, 연수구 전남(9) :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함평군 전북(5) :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
140,000원	2	부산(1) : 영도구 전남(1) : 장흥군
130,000원	6	부산(2) : 북구, 서구 전북(4) : 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120,000원	5	전북(5)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정읍시

자료: 국가보훈부

